

<b>민원종류</b>	일반민원
<b>제목</b>	[공동주택 관리법] 제93조의2(이하, "법") 제2항 위반에 따른 [형법] 제122조(직무 유기), [형법] 제123조(직권 남용), [형법] 제323조(권리행사 방해)
<b>내용</b>	고소인: 김명호 피의자: 1. 구윤철(?)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.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 과장, 최지수+이연주 제목: [공동주택 관리법] 제93조의2(이하, "법") 제2항 위반에 따른 [형법] 제122조(직무 유기), [형법] 제123조(직권 남용), [형법] 제323조(권리행사 방해)

#### 피의 사실

피의자들은 국토부 소속의 국민 중복으로서 자신들의 기본의무를 유기함으로써, 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.

고발인은 3.4일 은평구의 "조직적인 주택비리"에(자료1) 대하여,  
법 제3항 "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"에 의하여,  
주택건설운영과 주택비리 신고센터에(이하, "신고 센터")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다(신청번호 1AA-2603-0132898)(자료2).

따라서, 신고센터는 법 제2항

제1호 "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"에 따라 접수하고

제2호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"에 따라, 은평구청에 조사 및 조치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

1. 이연주(문서 접수 및 분류 보조 등)+최지수의(입주자 대표회의 구성, 관리규약) 합작 공모

(1) 이연주는 은평구에 이송함으로써(자료3),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무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"법 준수하라는 신청"을 거듭하여 받고도(자료4) 신고센터가 아닌 엉뚱한 부서로 떠넘기는 등(자료5) [형법] 제323조의 "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,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"하고 있고

(2) 넘겨 받은 최지수 또한 신고센터로 이송하지 아니하고

(3) 감사관 김문수는 법 위반하며 신고 센터 접수 시키지 않은 이연주+최지수 비호하며

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기에

2.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 감독 부총리, 신고센터 운영 책임자인 주택건설운영과 과장, 최지수+이연주 등을 [형법] 제122조(직무유기), 123조(직권남용), 제323조(권리행사 방해)의 범죄로 고발한다

2026.3.10 김명호

#### 첨부 자료

1. 은평구의 조직적인 주택비리 ⇒ <https://seokgung.com/corrupt9.htm>

2. 주택비리 센터에 제출된 국민신문고 민원
3. 이연주의 되쳐먹지 않은 이송 통지
4. 주택비리 센터에 접수된 이연주 고발 민원
5.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, 관리규약 부서의 최지수
6. 동료 비호하는 김문수

**첨부 파일**      자료4.pdf 자료2.pdf 자료3.pdf 자료5.pdf 자료6.pdf

## 처리기관 정보

**처리기관**            대검찰청 (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)  
**처리기관 접수번호**    2AA-2603-0413297  
**접수일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6-03-11 08:02:51  
**담당자(연락처)**      박인혜 (042-470-4562)  
**처리에정일**            2026-07-17 23:59:59

※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. 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## 답변 내용

**통지일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6-03-27 15:47:52  
**처리결과**            대전지방검찰청  
**(답변내용)**

김명호 님 귀하

○ 안녕하세요! 김명호 님

○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

(민원번호:1AA-2603-0357624)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. 귀하의 민원 취지는 『피고발인들은 국토교통부 소속

공무원으로서 고발인이 신고한 민원을

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타부서로 이송시키는 등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기에 고발한다』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민원답변

- 대전지검 사건과 국민신문고 접수담당자 박인혜 수사관입니다.

- 귀하의 민원은 우리 청 고발사건 2026형제 10065호로 수리되었으며, 인권보호부 송새봄 검사실(042-470-4097)에 배당되었습니다. 해당 검사실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국민신문고 민원과 별도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할 것입니다.

- 사건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위 담당검사실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이며, 국민신문고 접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접수 담당자(042-470-4562, 수사관 박인혜)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-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의 민원 또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

※ 본 답변을 보신 후에,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만족도 조사에 참여(국민신문고 로그인-'나의 신문고'를 클릭-만족도 조사)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.

'만족도 등록'은 사건처리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.

아쉽게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담당수사관은 귀하께서 중요시하는 사건수사나 결과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나, 그 외 민원 접수처리 과정, 답변 기타 형사법절차 진행에 있어 국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○ 민원 접수처리 및 답변에 대해 만족하신 경우 '만족' 평가 부탁드립니다.

※ 민원만족도 답변방법(예시)

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

위와 같이 해당 부분의 네모 칸에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.

2026. 3. 27.

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

첨부 파일